



최병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전문위원
choibh@hanafn.com
문의 : 02-2002-1383

학력·자격증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현재 활동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전문위원
기타 활동 前 PwC 삼일회계법인 국제감사본부, 세무본부(2003~2010년)
前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그룹 Tax (연결납세) 업무 수행
KBS1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등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숨을 곳 없어진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세금 역시 국경이 사라졌다.
하지만 거주자로 보는지 비거주자로 보는지에 따라 세제 차이가 날 수 있다.
거주자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세법적용 내용을 알아보자.



사례 1

A씨는 30년 전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이민을 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내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얼마 전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체류 기간보다 한국 내 체류기간이 길고 실질적인 생활근거가 한국에 있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통지와 함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었다. 과연 어떤 이유로 과세가 된 것일까?

거주자·비거주자는 국적과는 무관

일반인에게는 낯설지만 세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다. 바로 '거주자'라는 것이다.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국가의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반면,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

세를 하게 된다. 즉, 한 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과세범위 결정의 기준이 바로 거주자란 개념이다.

한 국가가 아닌 전세계를 상대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과세 여부를 두고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선박왕, 완구왕, 구리왕 사건도 거주자 인정 문제가 논란거리였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를 판단한다. 해외로 출국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위 사례에서 A씨가 거주자라는 판단은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만, 2년 간 183일 이상의 거소를 한국에 둔 경우에는 일단 '거주자' 쪽으로 판단의 추는 기울어 지게 되는 것이다. 국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체류기간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거주기간이 이렇게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국적과 거주자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자인 B씨는 절대 한국의 거주자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소가 한국에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등 실제적인 거주성 및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B씨를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도 있다.

(참고) 2015년 거주자 요건을 약화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을 '2년 중 1년 이상 체류'에서 '2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대폭 강화한 바 있었으나, 2018년 세법개정으로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기준을 다시 완화할 예정이다.



거주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보유 시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둘째,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방식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자.

거주자의 신고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기준 강화

최근 역외탈세와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각국은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를 신설·강화하여 국부 유출을 억제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 2011년 6월부터 전세계 금융소득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신고의무이다. 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 합계

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자로, 해당 금융계좌의 정보(보유자 성명, 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연중 최고잔액 등)를 다음해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FATCA, MCAA 등을 통해 다른 나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 했거나 계좌금액을 낮춘 경우 최대 20%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도 공개한다. 2017년까지는 신고기준이 10억원이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하여 5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2018년부터는 매월 말 잔액 합계가 5억이 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역외탈세 꼼짝 마!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FATCA & MCAA

앞으로 고액자산가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금도 세금 관련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비밀금고 역할을 했던 홍콩·스위스 등에 소재한 금융회사들의 자료도 다른 나라 국세청에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각국에서는 과세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는데, 그 선두주자가 미국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법률(FATCA)을 도입했다. 한미간 협정에 따르면 미국 과세당국은 미국 내 은행에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하거나 미국 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계좌를 가진 우리 국민의 금융정보(이자, 배당, 기타원천소득)를 제공하고, 우리 과세당국은 한국 내 개설된 5만달러 초과 미국인 계좌정보나 25만달러 초과 법인계좌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FATCA 시행에 발맞춰 OECD는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의 체결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 정부도 2017년 9월 영국, 케이만 등 50여 개 국과 최초로 금융 정보를 교

환했으며, 2018년에는 일본, 중국, 스위스 등과도 금융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등 교환국 수가 100여 개국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과세 사각지대는 점점 줄어들고 각국의 글로벌 과세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

사례 2 C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본인이 소유한 한 채의 아파트(1세대 1주택)를 처분하려 한다. 그런데 한국 거주자인 상태에서 파는 것이 세금이 적다는 말을 듣고 영주권 취득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며, 비거주자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적용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소득세 차이 ▶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매년 직장인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도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 시 9억원까지 주택양도분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도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다. 농지를 8년 이상 자

경하다가 양도할 경우 감면을 해주는 제도도 비거주자인 상황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등 어떤 상태에서 양도할지를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사례로 든 미국 국적의 B씨처럼 향후 비거주자가 될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거주자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사례2의 C씨도 향후 비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주자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처분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한국 세법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 상속세 측면에서 보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가 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상속재산에 국한해 과세된다. 상속세 계산 시 거주자에게는 적용되는 여러 공제(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30억원), 금융재산공제(최대2억원), 기업상속공제 등)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공제(2억원)만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증여재산, 비거주자라면 국내 증여재산에 대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증여 시 10년내 배우자에게 6억, 성년자녀에게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의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데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국내 + 국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특별공제	○	X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	X
	농지 8년 자경감면	○	X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	국내 + 국외 상속재산	국내 상속재산
	기초공제	○	○
	그 밖의 공제	○	X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국내 + 국외 상속재산	국내 상속재산
	증여재산공제	○	X

... SUMMARY

- ① 국적(이민법상 신분)과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무관하다. 실제적인 거주성 및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한다.
-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거주자라면 신고대상이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 ③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금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공제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향후 비거주자가 될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전에 따져보는 것이 좋다.